

1. 제정이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5호, 2025. 03. 25. 공포, 2026. 03. 26.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기준 및 절차,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기준·절차, 공동접속설비 설치 대상, 전문인력 양성 및 실증단지 운영, 그리고 그 시행에 필요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기준 마련 (안 제2조, 제3조, 제5조)

- 1) 해상풍력발전 관련 중요 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가정보원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정하고, 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 2) 위원회의 업무 중 실무위원회로 위임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실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나.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기준 및 절차 명확화 (안 제11조, 제12조, 제22조)

- 1) 예비지구 지정 요건으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기존 해양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분쟁 중인 해역이 아닐 것 등을 추가하고, 예비지구의 지정신청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함.
- 2) 예비지구 지정 해제 사유로 영향조사 결과 해양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예비지구 지정 해제 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시함.
- 3) 발전지구 지정 요건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과 해양환경성조사 및 환경성조사 결과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발전지구 지정 또는 변경 지정 시 관보 고시 사항을 정함.

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 (안 제15조, 제16조, 제21조)

- 1) 민관협의회를 정부위원, 민간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 공익위원의 비율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함.
- 2) 민관협의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의결하지 못한 경우,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권고하는 등 구체적인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함.

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환경성 평가 절차 규정 (안 제27조, 제32조, 제33조)

- 1)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필요한 사업자선정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구체화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 2) 실시계획 승인 전 사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성평가의 평가항목 등을 정하기 위해 환경성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하여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토 체계를 확립함.

마. 그 밖의 해상풍력산업 육성 지원 및 위임 사항 규정

- 1) 공동접속설비 설치 대상 발전지구의 규모를 1,00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고, 공동접속설비의 범위를 규정함.
- 2) 전문인력 양성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증단지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발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함.
- 3) 법에서 위임된 해상풍력전담기관 지정, 해상풍력입지정보망 구축·운영 정보, 실시계획의 승인, 준공 인가 및 사용, 개발비용 산출 및 납

부, 전문연구기관 지정,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전화: 044-203-5387, FAX: 044-203-4769, E-mail: romaser@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romaser@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
환경부 풍력산업과

3)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전화: 044-203-5387)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정보원장
2. 해양경찰청장

②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전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판단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9항제1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을 거친 안전

으로서 공동위원장이 서면 심의·의결에 부치도록 결정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려는 경우로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3조(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의 공동명의로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은 공동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추진단,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협회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해상풍력발전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해상풍력발전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위원회에 해상풍력발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7조제9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확정된 기본설계의 변경
2.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행하여지는 분쟁의 조정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선정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
4. 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등 각종 조치
6.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실증단지의 지정·운영
7.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가유산청, 국가정보원 및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해상풍력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 사항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해당 분쟁조정을 위한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쟁조정 안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⑧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단

장으로 한다.

⑨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⑩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⑪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세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2. 해상풍력 계획입지 지정 총괄·조정
3. 해상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 지원
4. 해상풍력 수용성 확보를 위한 업무 총괄·조정
5.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6.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법제와 회계의 운영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추진단은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상풍력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협회·기업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추진단의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전문가에게 의견 제시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추진단의 단장은 계획입지 지정 및 인허가 등 추진단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

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해상풍력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3. 그 밖에 해상풍력산업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이하 “전담기관업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추는 것
2. 전담기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갖추는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내부 규정을 갖추는 것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공고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전담기관은 매년 사업 실적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이하 “예비지구”라 한다) 및 해상풍력발전지구(이하 “발전지구”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해역의 풍황 정보
2. 어업활동 정보
3. 환경·해양환경 정보
4. 해상교통로 및 항로 등 해상교통 정보
5. 군사작전 및 교육훈련 지역 등의 정보
6. 국가유산의 위치 정보
7. 해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질 등에 관한 정보
8. 전력계통 정보

9. 그 밖에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이하 “입지정보망”이라 한다)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입력·관리 및 보안유지
2. 입지정보망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보급 및 운영
3. 입지정보망 구축·운영 및 고도화를 위한 수요 조사
4. 입지정보망의 활용 및 유사정보망과의 연계체계 구축
5. 그 밖에 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입지정보망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 또는 다른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 받아 이용하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입지정보망을 운영하는 경우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의 입·출력 및 입지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해양 탐사·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11조(예비지구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2. 기존의 해양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3.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에 관한 분쟁이 진행 중인 해역이 아닐 것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해당 지역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예비지구 지정신청 사유
3.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예비지구 지정요건에 대한 사전검토서
4. 그 밖에 예비지구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법 제14조제1항의 예비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시·도지사가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예비지구 지정이나 변경지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법 제17조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을 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는 예비지구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을 말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예비지구의 명칭

2. 예비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예비지구 지정 및 변경지정의 필요성(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지정 사유를 말한다)

4. 지정 및 변경지정의 효력발생일

제12조(예비지구의 지정해제)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향조사 결과 해양환경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향조사 결과 환경 및 생태 보전 가치가 높아 개발을 회피하거나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7조에 따른 민관협의회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분쟁조정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예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예비지구 지정해제의 사유 및 관련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거치기 전에 법 제17조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예비지구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해제되는 예비지구의 명칭
2. 지정해제되는 예비지구의 위치·면적
3. 예비지구 지정 해제 사유
4. 예비지구 지정해제의 효력발생일

제13조(기본설계의 중요사항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확정된 기본설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본설계 대상이 된 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
2. 해상풍력발전시설 총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
3. 전력계통 연계 지점, 송전선로 경로, 주요 항만시설 등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핵심 기반시설 계획을 현저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생태·생활환경성 사전조사 계획 및 저감대책
2. 법 제37조에 따른 실증단지 조성 계획 및 구역 확보계획(실증단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의 협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대상 구역의 해양환경 등 기후에너지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조사서(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외 지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적 측면의 영향조사서(이하 “환경영향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하여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30일 이내에 협의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검토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사전에 연장 사유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의견 중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의견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가 빠졌거나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기본설계안에 대한 협의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 누락·결여되어 있는 경우

3. 현황조사, 영향 예측·분석, 저감대책 및 사후 모니터링 계획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환경영향조사서와 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을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의견을 반영한 조치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정부위원 : 해당 예비지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지방의회 의원

2. 민간위원 : 해당 예비지구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어업인단체, 지역 주민대표 및 송전선로 경과지 지역의 주민대표

3. 공익위원 : 민관협의회의 협의사항과 관련된 에너지·자원, 환경·해양환경, 수산업, 해상교통, 국토이용, 과학·기술, 전력계통, 국방, 회계·금융 또는 갈등조정 분야의 전문가

②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 공익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민관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2. 민간위원 및 공익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④ 민관협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민관협의회는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 위원은 해당 분과협의회에서 논의할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이나 경험이 있는 민관협의회 위원 중에서 민관협회의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지명하며,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분과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관협의회와 분과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과 별도로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담기관 소속 전문가를 민관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담기관 소속 전문가는 민관협의회와 분과협의회 안전과 관련된 전문적인 설명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민관협의회의 운영) ① 민관협의회는 민관협의회의 공동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하여야 한다.

② 민관협의회 및 분과협의회는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협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민관협의회는 위원 전체의 합의를 통해 협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협의 결과를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6항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는 합의 또는 의결에서 제외한다.

④ 발전사업이 개시된 이후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의 이행, 환경 영향의 지속적 관리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민관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이해관계자 범위 등 기초자료 조사
2. 민관협의회 개최 전 기본설계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자문
3. 주민참여 이익공유 방안 등 협의안의 공정성·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자문

4. 민관협의회 회의 진행 및 이견 조정 지원

5. 그 밖에 민관협의회 전문성 확보 및 갈등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제16조제3항의 합의나 협의 결과를 도출한 경우(제21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에 동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보급사업에 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기관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분야별 전문가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2.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의 표준화를 위한 절차 및 지침의 마련·보급

3. 그 밖에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제18조(기본설계안에 대한 열람 및 공청회 등의 개최) ① 법 제17조제4

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설계안을 어업인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전문가 등(이하 “이해관계자등”이라 한다)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관청 및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지방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나 설명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나 설명회의 개최 일시·장소 또는 기간
3. 기본설계안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설계안에 대해 이의(異議)가 있는 이해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청회나 설명회에 참여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공청회나 설명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
2.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④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해관계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부기(附記)하고, 민관협의회 협의 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기본설계안에 대한 열람 및 공청회·설명회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협의결과의 통보기간)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1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보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 연장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정보의 공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민관협의회 개최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록
2. 공청회나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한 경우에 한한다)
3. 민관협의회 협의의견서

제21조(민관협의회 협의사항 분쟁조정) ①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협의회에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6조제3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협의 결과를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분쟁조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쟁조정 신청 사항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분쟁조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실무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권고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다시 개최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실무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2조(발전지구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
2. 법 제16조에 따른 해양환경성조사 및 환경성조사 결과를 고려할 것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

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발전지구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가
2. 해상풍력발전시설 용량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가
3. 확정된 기본설계에 포함된 전력계통 연계 지점, 송전선로 경과지, 주요 항만시설 등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핵심 기반시설 계획의 현저한 변경
4. 그 밖에 발전지구 변경이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쳐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변경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발전지구의 명칭
2. 발전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지정·변경지정의 효력발생일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 및 변경지정 사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공동접속설비의 설치 대상 발전지구의 규모)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지구”란 인접한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의 합이 1,00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단일 또는 복수의 발전지구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로서, 각 발전단지의 내부전선망이 끝나는 집합지점부터 송전사업자의 계통연계점까지 설치되는 해저케이블, 변전소, 전선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설비를 말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 건설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역의 지형, 지질, 환경요건 등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경우

2. 활용할 수 있는 공동접속설비가 이미 존재하거나 건설 중인 경우
제24조(발전지구의 지정해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해제되는 발전지구의 명칭

2. 지정해제되는 발전지구의 위치·면적

3. 발전지구 지정 해제 사유

4. 발전지구 지정해제의 효력발생일

제25조(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 사업개요서
2.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
3. 총사업비 및 산출 근거, 재원조달계획, 사업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자료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받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원조달방안의 현실성 및 안정성
2. 총사업비 추정의 적정성
3.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의 검토 및 비교 분석
4.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정책적 파급효과

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안보 및 안전확보를 위한 계획 및 노력
2. 해양환경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3.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사업비 적정성
4. 해상풍력발전시설 해체 및 원상복구 계획

②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설계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민관협의회 협의결과
3. 입찰참가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 방법
4. 입찰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5.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일정
6.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해당 발전지구 조성비용(제32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7. 입찰금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선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받으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발전사업계획서

가. 발전사업의 건설기간

나. 발전사업의 총사업비

다. 발전사업의 사업구조

라. 발전사업의 운영기간(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발전지구 유효기간 내에서 건설기간을 제외한 발전사업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마. 발전사업의 시행방법

3. 자금조달계획서

4. 주민수용성 확보 및 상생계획서

5. 해상풍력산업발전 기여계획서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입찰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가장 적합한 사업자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입찰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산업, 전력계통, 안보, 안전 및 금융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환경, 이익공유 및 주민 수용성 평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 평가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집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평가위원회는 심의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은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⑧ 그 밖에 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0조(위촉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1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 및 제26조에 따른 영향조사 및 환경성 평가 검토·협의 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해상풍력시설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설비의 설계도서 및 기술시방서
나. 공사공정표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기술검토서(전기설비·기계설비·구조물의 안전성 및 적정성 검토 포함)
3. 해양활동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해상풍력시설의 해체와 원상회복 계획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및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

2. 오류, 오기 등 단순한 변경

④ 법 제25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발전지구의 명칭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발전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위치와 면적

3. 해상풍력발전사업 개요

4.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제32조(환경성평가 실시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평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2

6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환경성평가준비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 환경성평가준비서를 제출 받은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성평가의 항목·범위·방법 등(이하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정하기 위한 환경성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 환경성평가준비서를 통보하고, 평가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평가협의회는 평가항목등을 정하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평가항목등을 최소한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평가항목등을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등의 심의내용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 받은 평가항목등에 대하여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환경성평가서를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환경성평가서를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성평가서에 대해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⑨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7항에 따른 환경성평가를 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⑩ 제3항에 따른 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그 밖에 환경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환경성평가 협의 및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시 계획의 승인을 하기 전에 제32조제7항에 따라 제출 받은 환경성평가서 중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성평가서를 검토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된 해양환경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빠졌거나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에 대한 협의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결여되어 있는 경우
 3. 환경현황조사, 영향 예측·분석 및 저감대책, 사후 모니터링 계획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2조제7항에 따라 제출 받은 환경성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유수면 내외 지역을 구분하기 어렵거나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수면에 대한 환경성평가서에 포함된 조류·생태·경관 등의 항목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의견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의견 및 협의의견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의견 및 제3

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그 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통보한 종합의견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실시계획 변경 시 환경성평가 특례)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인 받은 실시계획의 내용 중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면적 변화량이 최초의 환경성평가를 받은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누적된 변경의 경우 총면적의 변화가 최초의 환경성평가를 받은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를 받아 환경성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승인된 실시계획과 달리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2. 승인 사항 및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법 제30조에 따른 신고 없이 3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환경 및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사업자 및 사업구역의 위치
2. 실시계획의 승인일 및 승인취소일
3. 실시계획의 취소 사유

제36조(착공·공사중지의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착공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서 사본
2. 공사계획서
3. 공사감리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한 후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공사 중지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중지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 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 중지 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준공인가)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합격증
3. 그 밖에 준공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준공인가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발전지구의 명칭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개요
3. 개발사업 지역의 위치와 면적
4. 개발사업의 준공일

제38조(준공검사 전 풍력발전시설 및 설비 등의 사용) ①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는 법 제3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준공인가 전에 발전지구 개발 사업으로 설치된 풍력발전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의 필요성
2. 사용하려는 발전시설 및 설비의 완성단계 도면 및 공정현황
3. 사용하려는 발전시설 및 설비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합격증 또는 제64조에 따른 임시사용 허가증
5. 그 밖에 사용허가를 위한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전시설 및 설비가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판단하여 사용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9조(풍황계측기 설치 등 개발비용 산출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부과 대상이 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7조제3항에 따른 민관협의회 지원 비용
4. 그 밖에 계획입지 조성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사업자 부담비용의 총액을 산정하고, 이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발전지구에 둘 이상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부담비용의 총액을 각 사업자 별 발전설비용량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④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비용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31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기 전까지 완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전문인력 양성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풍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말한다.

1. 해상풍력 사업성 분석 및 개발
2. 해상풍력 핵심 기자재·시스템 설계 및 엔지니어링
3. 해상풍력 시설 설치 및 발전단지 건설
4. 해상풍력 발전단지 운영 및 유지보수

5. 해상풍력작업선박 운용 및 관리(선박의 운항은 제외한다)
6. 해상풍력 시설 해체 및 재활용
7. 그 밖에 해상풍력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해상풍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은 각 분야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산업 개요 및 최신 동향
2. 각 전문 분야별 핵심 기술 및 실무 역량 강화
3.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규 및 제도
4. 안전, 환경 관리, 비상 대응 능력
5. 그 밖에 해상풍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항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교육·훈련 인력의 전문성

2. 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충실성

3. 교육·훈련 방법의 타당성

4. 교육·훈련 시설의 적정성

5. 교육·훈련 기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해상풍력 실증단지 입지선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3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공공기관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상풍력 실증단지(이하 “실증단지”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관계 기관을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 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을 우대할 수 있다.

1. 해상풍력산업 연계 투자 및 기술이전 실행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2. 실증단지의 안전 및 성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인증을 취득할 것
3. 실증 과정에서 취득한 데이터 및 성과를 정부 또는 관련 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공유·확산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은 실증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증 대상 기술 및 설비
2. 실증 기간 및 단계별 목표
3. 실증 데이터 수집, 분석 및 활용
4. 안전 관리 및 환경 모니터링
5. 유지보수 및 비상 대응
6. 실증 성과 공유 및 확산
7. 실증단지 활용 신청 및 선정
8. 사이버보안 및 물리적 보호 방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실증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실증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가능한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서, 실증단지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항만과 배후단지 등 지원시설과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2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상풍력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수행계획
2. 해상풍력 기술 관련 연구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운영계획
3. 해상풍력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계획
4.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2. 해상풍력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대한 실적 또는 계획이 적정할 것
3. 해상풍력과 관련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것
4. 전문연구기관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그 해의 사업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상풍력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 실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유지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3. 해상풍력산업 등의 시장 및 기술에 관한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4. 해상풍력 관련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43조(수산업 등에 대한 영향조사·연구를 위한 위탁) 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해상풍력 분야에 대한 연구소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4.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해상풍력 관련 지방공기업
7.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8.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제44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취소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4.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제45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예비지구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안의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
4. 법 제19조에 따른 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업무

5. 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관리에 관한 업무
6. 법 제2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준공인가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영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해양탐사·조사 자료 및 해양 입지정보 관련
자료(제10조 관련)

1.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발전지구의 지질조사자료 등 입지정보자료
2.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직접 취득한 자료

해저 지반조사를 통해 취득한 조사자료	해저지형조사(수심, 기복, 경사도 등)
	시추조사(성분, 밀도 등)
	해저탐사(지하구조, 퇴적층 두께 등)
	입도·비중·전단강도분석
국가유산 영향진단 과정에서 취득한 조사자료	수중지형조사(지형(수심도))
	수중저면조사(영상도면)
	지층조사(탄성파조사)
	수중지자기조사(금속성 유물 매물)
	퇴적물조사(성분, 입도 등)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